

대한민국 국립 서울교육대학교와 중화민국 국립 대북교육대학교의 학술교류협정서

1. 목적

대한민국 국립 서울교육대학교와 대만 국립 대북교육대학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 및 우호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교의 교육학술 연구와 교류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학술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본 협정서를 체결한다.

2. 교육·학술교류계획의 항목:

양교는 다음과 같은 학술·교육 교류 계획을 진행한다.

- (1) 학부, 대학원, 기타 부문과 부속학교의 교직원의 교류
- (2) 학부와 대학원학생간의 교류
- (3) 학술 연구성과의 상호 제공
- (4) 학술에 관계되는 정기간행물 또는 일반간행물의 상호교류와 교환
- (5) 교육 연구계획에 대한 협력
- (6) 기타 각종 문화와 교육활동에 관한 교류

3. 추진 방식

- (1) 양 교는 학술 교류 계획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교류계획을 추진한다.
- (2) 교류계획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상대측에 교육·학술 교류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하여야 한다.
- (3) 본 교류 협정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 계획은 반드시 별도의 실행세척에서 지정 또는 사전에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개별 계획을 말한다.

4. 교류 비용의 부담

- (1) 양 교의 교직원 및 학생교류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되,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보조할 수가 있다.
- (2) 학술 연구 성과의 교류는 호혜 원칙 하에, 학술과 관계되는 정기 간행물과 일반 간행물의 교환 및 유통에 관한 제반 경비는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3) 양교의 공동 연구과제 및 각종 문화, 교육활동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는 개별 합의서에서 정한다.

5. 협정서의 유효기간

본 협정서는 양교의 대표자간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 년이다. 협정서의 연장은 양교의 동의를 얻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

6. 협정서의 수정

본 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은 양측의 동의 하에 수정할 수가 있다. 수정 시에는 6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7. 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 2 부씩을 작성하여 양측이 중국어와 한국어본 각 1 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10일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임채성

임채성

2020년 3월 10일

국립 대북교육대학교

총장 장신인

張新仁

中華民國國立臺北教育大學與大韓民國國立首爾教育大學 教育學術交流合約書

壹、目的

國立臺北教育大學與國立首爾教育大學雙方基於相互尊重、平等互惠、友好合作之原則，建立雙方教育學術研究與交流之合作關係，冀期共同推動具備國際視野之師資、專門人材培育，促進學術、文化水準之提昇，簽訂本合約。

貳、教育學術交流計畫項目

雙方大學進行學術教育交流計畫如下：

- 一、大學部、研究所、其他部門及附設學校教職員之交流及指派。
- 二、大學部與研究所學生之交流及指派。
- 三、學術研究成果之互惠共享。
- 四、教育學術相關期刊、出版品相互流通、交換。
- 五、教育研究計畫之合作。
- 六、其它各種文化、教育活動之交流。

參、推動方式

- 一、雙方大學分別指定學術交流計畫專責人員，負責推動本交流計畫。
- 二、計畫專責人員係指能提供對方有關推動教育學術交流計畫一切所需資訊者。
- 三、依本合約書推動之教育學術交流計畫，係指應另定備忘錄，或應事先依協議所定之個別合作計畫。

肆、交流費用之負擔

一、雙方教職員及學生交流所需經費各自負擔，但可徵求對方同意補助之。

二、學術研究成果之互惠共享，教育學術相關期刊出版品之交換流通所需之經費，由提供者自行負擔之。

三、共同合作之教育研究計畫，各種文化、教育活動之交流所需經費，依個別合約書定之。

伍、合約書之有效期間

本合約書經雙方代表簽署即生效力，有效期間為3年。合約書之更新，經雙方大學之同意於有效期限屆滿前為之。

陸、合約內容之修訂

本合約書所定之內容，可由雙方同意修訂之。修訂時，需於6個月前提出並經雙方協議者。

柒、合約書之保管

本合約書分別以中文及韓文作成1式2份，雙方各執乙份保管之。

2020年 3月 10日

國立臺北教育大學

校長 張新仁

張新仁

2020年 3月 10日

國立首爾教育大學校

校長 林采成

인채성